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3 선고 2014나6380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3 선고 2014나638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7 선고 2013가단506570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4. 12. 18.

판결 선고 2015. 2. 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7. 선고 2013가단5065706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아산시 C 공장용지 1,841m²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

A과 피고 사이에 2013. 3. 26. 체결된 매매계약을 51,217,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B는 원고에게 51,217,1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'연장되었'을 '연장되었다'로, 제5면 제11행의 'I공인중개사'를 'I공인중개사사무소'로 각 고치고,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('6,500만 원은 ~ 지급하였으며')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,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당심에서 제출된 제16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평택종합금융센터장, 국민은행서현역 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고(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),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(다만, '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' 부분 제외)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6,500만원은 2013. 4. 10. A에게 4,000만원을 직접 교부하고, A의 요청에 따라 2013. 4. 10.

M에게 6,697,497원을, 2013. 4. 11. O에게 1,500만원을 각 송금하고, 2013. 4. 23.

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게 M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3,032,745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(다만 차액 269,758원은 A과 피고 사이에서 위 조합에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에 관하여 계산상 착오로 지급되지 않았다), 2억 원은 M의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을 피고가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,

[추가 사항]

한편,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이전에 이 사건

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(한편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, 당심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375,564,000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50,000,000원과 큰 차이가 없고, 갑 제14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위 추인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.

2. 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익현

판사이세창

판사강수정